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 494

제출연월일 : 2009. 6. 8. 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시민의 교육·문화·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.

나.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의 개관시간과 휴관에 대하여 정함(안 제4조).

다.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의 사용허가와 사용제한 및 사용료 등에 대하여 정함 (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제2회 추경에 반영예정

다. 합 의: 예산담당관 합의

라. 기 타

(1) 규제심사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2) 입법예고 : 2009. 5. 1. ~ 5. 21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교육·문화·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 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
- 제2조(위치)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(이하 "복지관"이라 한다)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길 28(흑석동)에 둔다.
- 제3조(사업)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시민의 교육·문화·복지 증진 사업
 - 2.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재가복지 사업
 - 3.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자원봉사자 발굴 사업
 - 4. 그 밖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사업
- 제4조(개관시간 및 휴관) ①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다만, 대전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 - ②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1월1일, 설날, 추석
 - 2.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
 -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전에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5조(사용허가)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6조(사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- 1.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2.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
- 3.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설립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
- 제7조(사용료 등) ①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는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②복지관의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제1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의 범위안에서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.
- 제8조(사용료의 감면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편의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.
 -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 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 공자유족증 소지자
 - 3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증 및 5·18민주 유공자유족증 소지자
 - 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. 이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.
 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1.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
 - 2.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행사
 - 3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9조(사용료 등 반환) 복지관의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- 제10조(사용자의 변상책임) 사용자는 복지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) 사용자는 복지관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- 제12조(위탁운영)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

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관준비) 시장은 이 조례 시행전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개관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, 위탁운영자 선정 등 개관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

[별표 1]

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(제7조제2항 관련)

1. 사용료

가. 주민편의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이용 구분	사용료			ען די
		성 인	청소년	어린이	비고
수영장	월이용권	35,000	25,000	15,000	월
	1회 이용시	2,000	1,500	1,000	1일
체력단련실	월이용권	45,000	30,000	무료	월
	1회 이용시	3,000	2,000	무료	1일
찜질방	월이용권	35,000	25,000	무료	월
	1회 이용시	2,000	1,500	무료	1일

^{※ &}quot;성인"이란 20세 이상 자를 말한다.

나. 임대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사용료	비고
다목적실 (세미나실)	1회/4시간	40,000	
다 목 적 체 육 실	1회/4시간	10,000	

^{※ 1}시간 초과시 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하되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

2. 프로그램 이용료

가. 50,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산정한 금액 나. 프로그램 1건별 월 기준

^{※ &}quot;청소년"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.

^{※ &}quot;어린이"란 13세 미만 자를 말한다.

[별표 2]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의 반환기준 (제9조 관련)

구 분	반 환 사 유	반 환 기 준	
공 통	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	전액환급	
사용료	1.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		
	가.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	전액환급	
	나.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	전액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%배상	
	다.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	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 지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%배상	
	2.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		
	가.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	전액환급	
	나.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 까지 취소하는 경우	사용료 총액의 10% 공제후 환급	
	다.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	사용료 총액의 10% 공제 후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	
프로그램 이용료	1.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	전액환급	
	2.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		
	가. 수강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	전액환급	
	나. 수강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	사용료 총액의 10% 공제 후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환급	

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

십 사 보 고 서

2009. 7.10 교육사회위원회

I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6. 8 대전광역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6.8

다. 상 정 일 자 : 제183회 제1차 정례회

제6차 교육사회위원회(2009. 7.10)

상정, 질의, 심사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복지여성국장 조정례)

1. 제안이유

시민의 교육·문화·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 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정함 (안 제2조 및 제3조).
- 나.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의 개관시간과 휴관일에 대하여 정함(안 제4조).
- 다.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의 사용허가와 사용제한 및 사용료 등에 대하여 정함(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).

Ⅲ.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궘태환)

본 조례안은 시민의 교육·문화·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,

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는 목적을,
- 안 제2조는 복지관의 위치를,
- 안 제3조는 시민의 교육·문화·복지증진사업 등 복지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4조는 개관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, 휴관일은 1월 1일, 설날, 추석 등 개관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5조는 복지관의 사용허가에 관한 내용을,
- 안 제6조는 복지관의 사용제한에 관한 내용을,
- 안 제7조는 복지관의 시설사용료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등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8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,
- 안 제9조는 징수된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10조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,

- 안 제11조는 복지관 사용에 대한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12조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음.

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본 조례안은 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교육·문화·복지 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,
- 안 제4조 제1항의 개관시간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최적의 시간 결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

안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, 별표1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내 유사 시설의 시설사용료와의 균형, 시민의 적정한 재정부담,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증진 등의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,

안 제8조(사용료의 감면) 규정에는 독립유공자, 꿈나무사랑 카드 소지자,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Ⅳ. **질의·답변 요지** : 생 략

V. **심 사 결 과** : 원안가결

VI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 음